

“연구원” 및 『학술지』 발행관련 제규정

2015. 4. 현재

▶ “과학기술법연구원” 규정

과학기술법연구원규정

2003. 10. 17 제정
2008. 6. 17 개정
2013. 3. 12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연구원은 과학기술법관련법에 대한 학·연·산 협력연구, 법일반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연구 및 그 결과의 발표와 보급을 통하여 과학기술의 발달,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명칭과 위치) 이 연구원은 과학기술법연구원(이하 ‘본 연구원’이라 한다)라 칭하며 한남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내에 둔다.

제 3 조(사업) 본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과학기술관련법에 관한 연구 및 학술활동
2. 국내·외 관련 연구기관, 관련 행정기관 및 관련 법률실무가들과의 학·연·산협력연구
3. 학술심포지움 등의 학술대회 개최
4. 외국학술기관과의 교류·협력
5. 전문학술지의 발간
6. 각종 연구용역사업의 수행
7. 학술서적, 교재 등의 연구 보급
8. 과학기술법전문가를 위한 (재)교육과정의 신설 개정(2008.6.17)
9. 정보·연구 지원센터의 구축 신설(2008.6.17)
10. 기타 연구원의 설립목적과 관련된 사업 신설(2008.6.17)

제 2 장 조 칙

제 4 조(임원) ① 연구원의 임원은 원장과 간사 각 1인, 감사 2인으로 한다.

② 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③각 연구센터 소장은 연구원의 상임연구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간사는 연구원의 상임연구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 ⑤감사는 연구원의 상임연구원 중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 5 조(연구센터) ① 연구원은 학문 분야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연구센터를 둔다. 개정(2008.6.17)

1. IT법제연구센터 개정(2008.6.17)
2. BT법제연구센터 개정(2008.6.17)
3. 산업법제연구센터 개정(2013.3.12)
4. 지적재산권법연구센터 신설(2008.6.17)
5. 일반법제연구센터 신설(2008.6.17) 개정(2013.3.12)
6. 외국법제연구센터 개정(2013.3.12)

②원장은 연구활동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연구센터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폐쇄할 수 있다.

제 6 조(법률상담센터) ①연구원에는 법률상담센터를 둘 수 있다.

②법률상담센터는 지역주민 및 학생들의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과 조언을 담당하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

제 7 조(연구원) 연구원에는 상임연구원, 비상임연구원 및 전임연구원을 두며, 연구활동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객원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본교 법과대학 소속 전임교원은 상임연구원이 된다. 다만, 원장의 요청에 따라 본교 타 단과대학 전임교원을 상임연구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2008.6.17)

③전임연구원은 다른 본직이 없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원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임용한다.

④객원연구원은 국내·외 저명학자로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원장이 임명한다.

⑤연구보조원은 본교 대학원 졸업 또는 재학생으로 하되 원장이 임명한다.

제 3 장 위 원 회

제 8 조(운영위원회) ①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연구원의 발전계획
2.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평가
3. 예산 및 결산
4. 규정의 제(개)정
5. 기타 주요사항

- ②운영위원회는 원장이 위원장을 겸임하고, 각 연구센터 소장과 간사를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연구원 상임연구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 ③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④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운영위원회는 개별안건에 관하여 원장, 각 연구센터 소장과 간사로 구성된 운영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 ⑥운영위원회 및 운영소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간사와 위원장은 날인하여야 한다.

제 9 조(편집위원회)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을 위한 기획과 편집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두며,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2008.6.17)

제 10 조(자문위원회) 본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기타 주요사항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따로 둘 수 있다. 신설(2008.6.17)

제 4 장 재정 및 운영

제 11 조(재정) ①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재정에 충당한다. 개정(2008.6.17)

1. 연구원 운영비
2. 교내외 학술지원연구비
3. 각종 후원금
4. 기타 수입

제 12 조(보고) 연구원장은 매년 3월말 이전에 운영실적(예·결산 등) 및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연구원 명단 포함)를 교무연구처장을 경유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2008.6.17.)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의 제정 이전의 과학기술법연구소는 과학기술법연구원이 승계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31일부터 적용한다.